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19.04.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자문”이라 함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“산업체 등”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자문 방법 등)

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 단, 교원이 직접 산업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는 배정절차 없이 산업자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실시가 가능하다.

③ 교원은 산업자문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산업자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신청시에 정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제5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는 1백만원 초과(부가가치세 미포함)시에만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%를 산학협력단에 10%를 배분한다.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, 산업자문료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시지급하며, 과세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기타)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계약서,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및 산업자문 완료확인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산 업 자 문 신 청 서

지 원 분 야 (해당분야선택)	(이·공학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)				
신청기관(업체)	기관명		대표자		
	담당자		전화번호		
			E-mail:		
	주소				
자 문 기 간	20 . . . ~ 20 . . . 총 시간(회)		산업자문료	(원) (부가세 포함)	
산업자문 주제					
자 문 교 원 (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)	성명	소속/부서	연락처	참여율	비고
현재의 문제점	필요시 별지첨부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필요시 별지첨부				
성공시 기대효과	필요시 별지첨부				
기타제안	필요시 별지첨부				

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기관 : **대표 :** **(인)**

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산업자문(기술지도,컨설팅) 계약서</td><td>계약번호 제 호
공고번호 제 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계약당사자</td><td>1. 신청기관</td><td>◦ 상 호(법인명) :
◦ 사업자등록번호 :
◦ 주 소 :
◦ 전 화 번 호 :
◦ 대 표 자 :</td></tr>
<tr><td>2. 자문기관</td><td>◦ 상 호(법인명) :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
◦ 법인등록번호 : 161371-0003708
◦ 주 소 :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(산학취업본부)
◦ 전 화 번 호 :
◦ 대 표 자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12">계약내용</td><td>1. 자문주제</td><td></td></tr>
<tr><td>2. 자문교수</td><td>성명 : (소속 :)</td></tr>
<tr><td>3. 자문기간</td><td>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</td></tr>
<tr><td>4. 자문방법</td><td>내부교육 및 현장지도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5. 자문비용</td><td>금 만원정 (₩ ,000,000) / 회 (부가세 포함)</td></tr>
<tr><td>부가세는 신청기관이 부담한다.</td></tr>
<tr><td>자문료는 자문종료 후 15일 이내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해야한다.</td></tr>
<tr><td>6. 성과물소유관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가. 유형결과물</td><td>신청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.</td></tr>
<tr><td>나. 무형결과물</td><td>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정한다.</td></tr>
<tr><td>7. 계약불이행책임</td><td>귀책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되, 손해배상액은 상호협의 결정한다.
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문기관 관할법원에 제소한다.</td></tr>
<tr><td>8. 기타</td><td>- 귀책사유 없이 과제수행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한다.
- 자문 진행 중 취득한 정보는 비밀은 엄수하여야 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,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서명날인 후 이 계약서를 상호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신청기관 : (인)

자문기관 :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인)

자문교수 : 건양대학교 학과 (인)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3호 서식]

산업자문 결과보고서

지 원 분 야 (해당분야 선택)	(이·공학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)		
신청기관(업체)			
자 문 기 간	20 . . . ~ 20 . . . 총 시간(회)	산업자문료	(원) (부가세 포함)
산업자문 주제			
자문 내용 및 결과			

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

신청기관 : **대표 :** **(인)**

자문교수 : **학과 교수 :** **(인)**

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산업자문 완료 확인서

자문주제 :

자문기간 :

계약일자 :

자문교수 :

위 계약에 따라 자문이 성실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 (인)

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